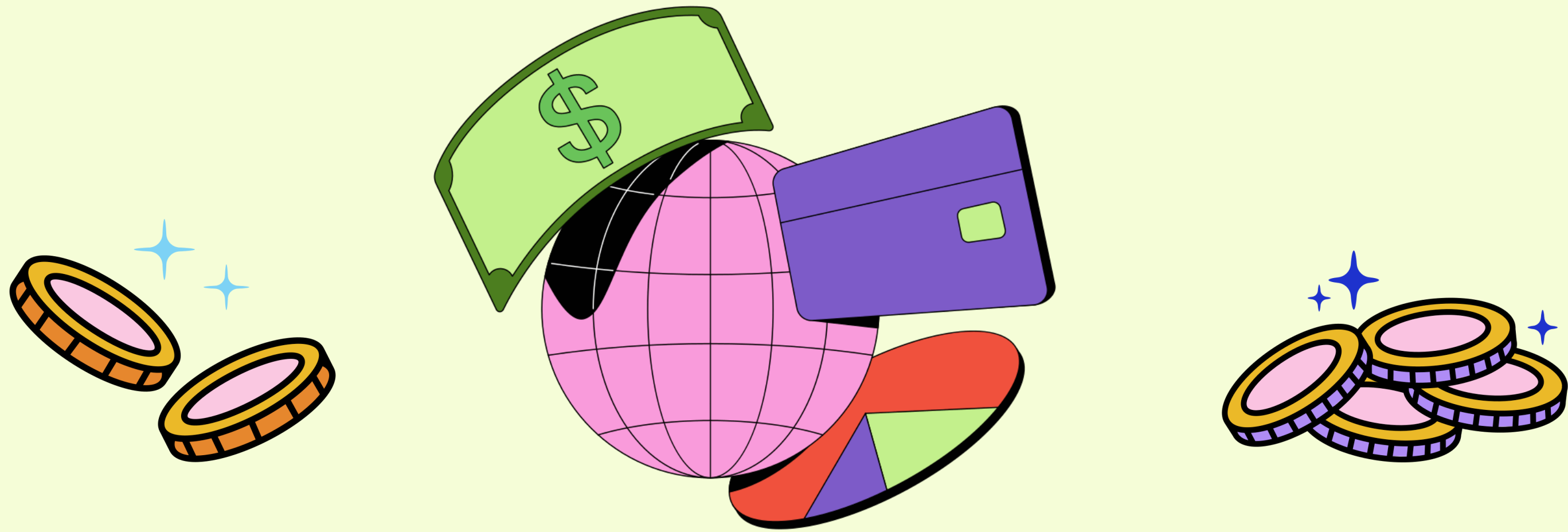




NEWSLETTER

2026년 7월 세무 정책 업데이트: 주요 변경 사항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HANKUKLAWFIRM



0942 339 063



info@hankuklawfirm.com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추가 대상:

-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베트남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세금 신고 수정 기한 5년으로 단축

세금 신고서의 수정·보완 신고 가능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행정 위반 처분 시효(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 세금 환급·면세·감면 제도 신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세금 신고 규정 보완

추가 내용: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을 갖춘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국내 또는 해외)는 해당 플랫폼 운영자(국내 또는 해외)는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가구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대신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반면,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계산·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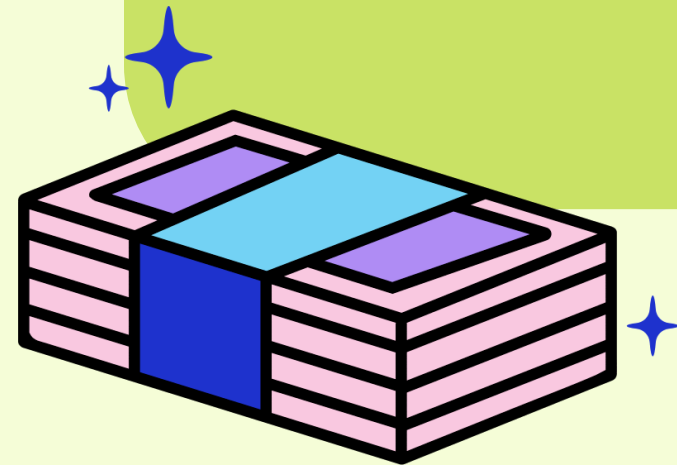
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 확대

세무당국이 정액세(추정과세) 금액을 결정

신경제 모델 및 국제조세 관리 강화

2025년 조세관리법은 글로벌 최저한세 (Global Minimum Tax) 관련 규정의 이행을 세무당국의 국제조세 관리 업무에 공식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상호합의절차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및 사전가격 결정제도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국제 조세 분쟁을 해결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확대

조세관리법은 회계법에 제70a조를 추가하여 세무 절차 대행 서비스 사업자 (세무대리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회계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단,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이전 발생한 세금 체납: 조세관리법 2025에 따라 처리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면제·감면·선징수된 세금: 조세관리법 2019에 따라 계속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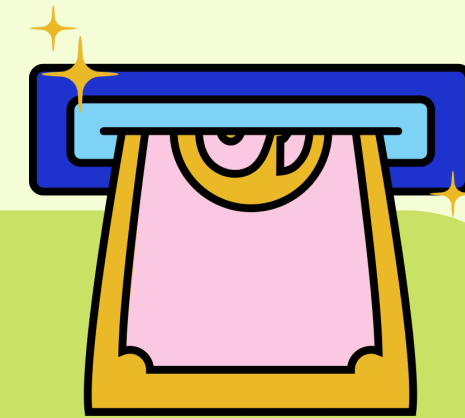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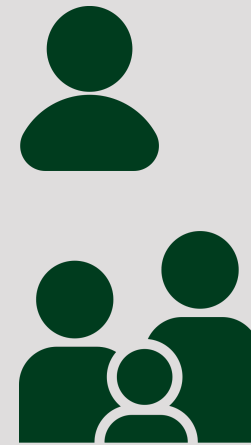


조세관리법 제108/2025/QH15호의 9가지 주요 개정 사항



인적공제액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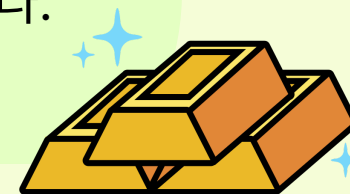
- 납세자 본인:
월 1,100만 동 → **1,550만 동으로 인상.**
-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 동 → **620만 동으로 인상.**



금 투자 관련 신규 규정: 세율 **0.1%**

세율 수준:
금과 거래 시 각
거래별 양도금
액의 0.1% 세율 적용

시행 로드맵: 정부는 시장 상
황에 맞추어 과세 대상 금 거
래 금액 기준 및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누진세율 구
조가 기존
**7단계에
서 5단
계로 축
소된다.**

세율 구간	월 과세소득 (백만 VND 기준)	세율
1	10	5%
2	10 초과 ~ 30 이하	10%
3	30 초과 ~ 60 이하	20%
4	60 초과 ~ 100 이하	30%
5	100 초과	35%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의 3가지 주요 개정 사항



법률 09/2026/QH16의 02가지 주요 개정 사항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매출액 변경

개인소득세(PIT) 및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
이 되는 연 매출 5억 VND 기준이 폐지되고, 대신
정부가 규정하는 기준으로 변경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다.

법인세 면세 대상 추가

정부가 법인세(CIT) 면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
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 10억 VND

구체적인 매출 기준은 정부령 제141/2026/NĐ-CP
에서 규정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144/2026/ND-CP의 새로운 3가지 사항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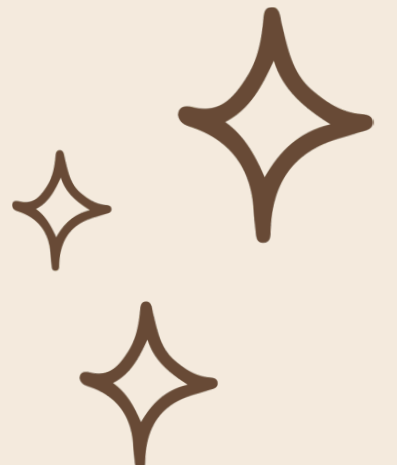
- 생명보험, 건강보험, 학습자 보험 및 기타 보험 서비스...
- 보험 서비스 중개 수수료 수입
- 채권 매각(대손채권 매각) 활동
- 보험업 관련 법률에 따른 재보험 활동, 외국 국적의 원유 저장 설비 및 석유·가스 장비,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대한 보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 개정

-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동시에 생산·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매입 부가가치세(VAT) 중 공제 가능한 부분과 공제 불가능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과세 대상 활동에 해당하는 매입 VAT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비현금 결제 관련 신규 규정

계약에 따라 외상 또는 할부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매입 부가가치세(VAT)는 공제 가능하다
단, 지급기일이 되었음에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
→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VAT 공제분은 조정하여 차감해야 한다.
이후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한 경우,
→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신고를 통해 다시 매입 VAT 공제가 가능하다.





HANKUK
LAWFIRM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nfo@hankuk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ANKUKLAWFIRM

 0942 339 063